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24. 6. 25.>
■ 住民登録法施行規則 [別紙第14号の3書式] <改正2024年6月25日>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 住民登録票の閲覧又は謄本・抄本交付の制限申請書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裏面の留意事項及び作成方法をよく読んで記入し、申請人はグレーの欄に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表面)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자 受付日	처리기간 즉시 処理期間 即時
--------------	-------------	--------------------

-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대상자 (총 명)
※ 閲覧又は謄本・抄本交付制限対象者 (合計 名)

신청인과의 관계 申請人との関係	성명 氏名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住所又は住民登録番号

- ※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閲覧又は謄本・抄本交付制限対象者は、「住民登録法」第29条第2項第5号各目に該当する者〔世帯主の配偶者、世帯主の直系血族、世帯主の配偶者の直系血族、世帯主の直系血族の配偶者、世帯員の配偶者（住民登録票抄本に限る）、世帯員の直系血族（住民登録票抄本に限る）〕から指定できます。

신청인 (본인) 申請人 (本人)	성명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주소 (시·도) (시·군·구) 住所 (市・道) (市・郡・区)	
	연락처 連絡先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 존비속) 申請人 (世帯員及び直系 尊属・卑属)	성명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연락처 連絡先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 존비속) 申請人 (世帯員及び直系 尊属・卑属)	성명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연락처 連絡先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 존비속) 申請人 (世帯員及び直系 尊属・卑属)	성명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연락처 連絡先	

신청인 (세대원 및 직계 존비속) 申請人 (世帯員及び直系 尊属・卑属)	성명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연락처 連絡先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합니다.

「住民登録法」第29条第6項及び同法施行令第47条の2に基づいて、住民登録票の閲覧又は謄本・抄本交付制限を申請します。

년월일

年 月 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市長・郡守・区庁長、又は邑長・面長・洞長及び
出張所長

귀하 殿

<p>첨부서류 添付書類</p>	<p>※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p> <p>※ この申請書を提出する際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一つに該当する立証書類を添付して提出してください。但し、第3号に基づく書類を提出する場合は、「医療法」第3条第2項第1号・第3号に基づく医療機関が発給した診断書、又は警察官署が発給した家庭内暴力の被害事実を疎明することのできる書類を一緒に提出してください。</p> <p>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p> <p>1. 「家庭内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第5条に基づいて設置された家庭内暴力に関する相談所の長、又は同法第4条の6に基づいて設置された緊急電話センターの長が発給した相談事実確認書</p> <p>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p> <p>2. 「家庭内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第7条に基づいて設置された家庭内暴力被害者保護施設の長が発給した家庭内暴力被害者保護施設入所確認書、又は同法第4条の6に基づいて設置された緊急電話センターの長が発給した緊急シェルター入所確認書</p> <p>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p> <p>3. 「犯罪被害者保護法」第7条に基づいて設置された保護施設の長が発給した相談事実確認書、又は入所確認書</p> <p>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p> <p>4. 「性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第10条に基づいて設置された性暴力被害相談所の長、又は同法第18条に基づいて設置された性暴力被害者統合支援センターの長が発給した相談事実確認書</p> <p>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p> <p>5. 「性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第12条に基づいて設置された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の長が発給した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入所確認書</p> <p>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p> <p>6. 「ひとり親家族支援法」第19条に基づいて設置された一時支援福祉施設の長が発給した一時支援福祉施設入所確認書</p> <p>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p> <p>7. 「老人福祉法」第39条の5第2項に基づいて設置された地域老人保護専門機関の長が発給した相談事実確認書</p> <p>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p> <p>8. 「老人福祉法」第39条の19に基づいて設置された虐待被害老人専用シェルターの長が発給した虐待被害老人専用シェルター入所確認書</p> <p>9.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p> <p>9. 「住民登録法」第7条の4第1項第3号二. に基づく被害者に対する住民登録番号変更決定通知書</p> <p>10.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p> <p>10. 「児童福祉法」第15条第1項に基づく保護措置を実施した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が発給した被害児童保護事実確認書</p> <p>11. 「아동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p> <p>11. 「児童保護審判規則」第3条に基づく臨時措置・保護処分・臨時保護命令、又は被害児童保護命令の決定書の謄本又は抄本</p>	<p>수수료 없음 手数料なし</p>
----------------------	---	-------------------------

	12.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家庭保護審判規則」第3条に基づく臨時措置・臨時保護命令、又は被害者保護命令の決定書の謄本又は抄本 1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3. 「檢察事件事務規則」第103条第1項に基づく告訴・告発事件決定結果通知書 14.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제2항에 따른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4. 「檢察事件事務規則」第119条第2項に基づく事件決定結果証明書 15. 「경찰수사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 통지서 15. 「警察捜査規則」第97条第2項に基づく捜査結果通知書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16. 確定した法院判決文の写し	
--	---	--

유의사항

留意事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家庭内暴力犯罪の処罰等に関する特例法」第2条第5号に基づく被害者は、同法同条第4号に基づく家庭内暴力行為者が被害者自身と住民登録地が異なる場合、「住民登録法」第29条第2項第5号に該当する者を対象者に指定し、被害者本人と世帯員及び直系尊属・卑属の住民登録票の閲覧又は謄本・抄本交付制限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住民登録票の閲覧又は謄本・抄本交付制限の申請は、家庭内暴力被害者本人が邑・面事務所か洞住民センターで住民登録証などの身分証明書と添付書類を一緒に提出して申請してください。

작성방법

作成方法

-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申請人」は捺印する代わりに署名することができます。
- ‘신청인과의 관계’ 칸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해당 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申請人との関係」欄には、申請人の家族関係登録簿に記載された当該対象者との関係を記載します。